

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(제44조제3호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설치위치

1) 너비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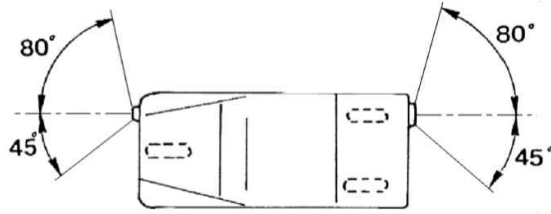
- 가) 방향지시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초소형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
- 나) 전차축에 1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거나 너비가 1,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앞면 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240밀리미터 이상일 것
- 다) 전차축에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,0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500밀리미터 이상일 것
- 라) 후차축에 1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거나 너비가 1,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뒷면 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180밀리미터 이상일 것
- 마) 후차축에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,0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500밀리미터 이상일 것
- 바) 변환빔 전조등과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에 따른 앞면방향지시등 최소광도는 아래와 같다.
 - (1) 최소 거리가 75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90칸델라 이상
 - (2) 최소 거리가 4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175칸델라 이상
 - (3) 최소 거리가 2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250칸델라 이상
 - (4) 최소 거리가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400칸델라 이상

2) 높이 방향

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,500밀리미터 이하일 것

나. 관측각도

- 1)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,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. 다만, 방향지시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.
- 2)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외측 80도, 내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



<앞면 및 뒷면방향지시등의 관측각도>

다. 조사 방향

- 1) 앞면방향지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. 다만,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.
- 2) 뒷면방향지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

라. 작동조건

- 1)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점등될 수 있는 구조일 것
- 2) 초소형자동차의 하나의 측면의 모든 방향지시등은 1개의 스위치에 의해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

마. 표시장치

- 1) 방향지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시각적(점멸 녹색 표시장치), 청각적 또는 시·청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
- 2) 방향지시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방향지시등이 점멸하지 않는 상태로 점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바목1)과 다른 횡수로 점멸 또는 표시장치가 표시되지 않을 것
- 3) 청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시각적 표시장치의 점멸속도와 같아야 하며, 명확한 소리를 제공할 것

바. 그 밖의 기준

- 1) 방향지시등은 1분간 90 ± 30 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
- 2) 방향지시등은 각 측면에서 동시 또는 교대로 점멸될 수 있을 것
- 3) 방향지시등은 조종장치 작동 후 1초 이하에 빛이 점등되어야 하고, 1.5초 이하에 소등될 것
- 4) 단락이외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각 측면의 다른 방향지시등은 점멸 또는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점멸횟수는 바목1)과 다른 횡수로 점멸될 수 있다.

2. 광도는 별표 5의22 제2호 또는 별표 6의17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